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박해철·김승원·박지원
이재관·김 윤·이훈기
최민희·김 현·황명선
박선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, 가뭄취약지도,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임진강·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·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,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.

이에, 홍수위험지도·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(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).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수문조사기본계획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수문조사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홍수피해·가뭄 상황조사 의 실시 등)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(「하천법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) 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 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 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 험지도를 작성하며, 가뭄이 발 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 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7조(홍수피해·가뭄 상황조사 의 실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</u> <u>경우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</u> <u>약지도에는 임진강과 북한강</u> <u>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</u> <u>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</u> <u>하여야 한다.</u>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9조(수문조사의 실시) ① (생 략)	제9조(수문조사의 실시) ① (현행 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·효율화를 위하여 대통	② ----- -----

